

차례



성폭력
어란?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형태	3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	4



성희롱
어란?

성희롱의 개념	8
성희롱의 피해	9
대학내 성희롱의 유형	10
성희롱의 판단기준	14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사회통념	16



남녀차별
어란?

남녀차별의 개념	18
남녀차별의 형태	19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가이드	22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자세	24
성폭력 대처가이드	26
교내 성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29
교내 성폭력상담실의 피해자 지원	31



부록

교내 성폭력 관련법률	32
성폭력 범죄 관련법률	41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세대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조 제①②항〉



성폭력의 형태

- 모든 남녀차별 행위
- 신체적 · 언어적 · 시각적 성희롱
- 신체 폭행
- 지위를 이용한 강요된 성관계
- 미수에 그친 강간
- 실제 강간
- 스토킹
-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불안, 공포, 이로 인한 행동제약을 포함한 간접 성폭력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

학생(선후배·동기)간의 성폭력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행사(예: MT, 새내기 배움터, 대학축제, 술자리), 공공장소(예: 강의실,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원치않는 성적 농담·음담패설·음란가요·성적 모욕.
- 술 따르기 강요, 춤파트너 강요 등의 성적 접촉.
- 수면중이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추행.
- 권력을 이용한 성관계요구, 성추행, 강간
- 개인적인 친밀성을 매개로 동의나 합의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접촉.
-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데이트 강요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유포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 일어나는 동의하지 않는 의도적인 성적접촉·성기노출·흠쳐보기·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 사진,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혹은 사이버 성폭력.
-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포스터 혹은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
- 학생회 혹은 동아리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





교수(강사)-학생(대학원생·조교)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개념

1. 누가(행위자·가해자), 누구(대상자·피해자)에게
2. 교육·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3.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언동으로
4.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교육·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피해

- **인권 침해**
가해자가 성희롱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인권침해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됩니다.
- **심리적인 피해**
적개감, 반감, 의심, 분노, 화, 공포, 잘 놀람, 우울증, 불면증, 불안정, 자존심 손상, 모욕감, 당혹감, 자기비하, 죄책감, 수치심, 혼돈, 소외감, 무력감, 위협감, 다른 사람이 알까 하는 두려움, 부서 이동에 대한 갈등, 운명론에 빠짐, 자포자기 등.
- **신체적인 피해**
두통, 식욕상실, 소화불량, 위장염, 불면증, 체중감소/증가, 합병, 월경불순 등.
- **사회적인 피해**
업무능력저하, 의욕상실, 사기저하로 직장생활 부적응, 빈번한 이직 혹은 전직 등.



대학내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외설적인 논평
- 상대에게 성적 경험이나 성생활에 대해 질문
- 듣기 거북한 음란한 성적 농담과 기담(奇談)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모욕과 비방
- 타인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와 음성
-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최유
- 성적인 관심, 욕구 표현(예:식사나 만남을 요구)
- 야유회(MT), 세미나, 만찬 등의 장소에서 이성을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성희롱

- 업무나 교육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을 진열, 게시, 유통시키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과 얼굴표정
- 성적인 낙서
-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화, 팩스, 편지, e-mail로 유포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 스치고 지나감
- 필요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과도한 신체접촉
- 안마, 애무, 술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같이 춤추기를 강요
- 개인의 신체공간을 침해하는 신체접촉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야유, 술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킴(예: 차심부름 복사)
- 모임에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음(예: 함께 볼루스 출 것을 요구)
-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성을 무시하는 발언(예: 어디 감히 여자가.....)

성희롱의 판단기준

-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 지의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자율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한 문항이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나의 이런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이런 행동이 학내의 대자보나 신문, 혹은 외부의 언론에 보도되어도 무방합니까?
- 상대방도 나와 동등한 인권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 가족 혹은 애인이 옆에서 보고 있어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내 가족 혹은 애인에게 나의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희롱에 관한 잘못된 사회통념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학업이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인간관계의 활력소가 된다.

원치 않는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악의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인간관계속에서의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생각에 앞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대화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충동이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이 성희롱의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녀차별이란?

남녀차별의 개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합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남녀차별의 형태

- 모든 성희롱 행위
- 특정 성별을 이유로 취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킴(예: 잔심부름)
-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논평, 농담으로 품위를 손상시킴(예: '강의실에 꽃들이 많으니.....')
-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및 생활지도(예: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교내 활동기회 및 진로선택범위를 제한하거나 활동 내용 구분(예:해외연수, 직업훈련 등의 교육대상자 선정시 특정성을 제외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 역할 고정관념강조(예:여성다움 / 남성다움 강조)



-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젠더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구별·배제·제한·소외시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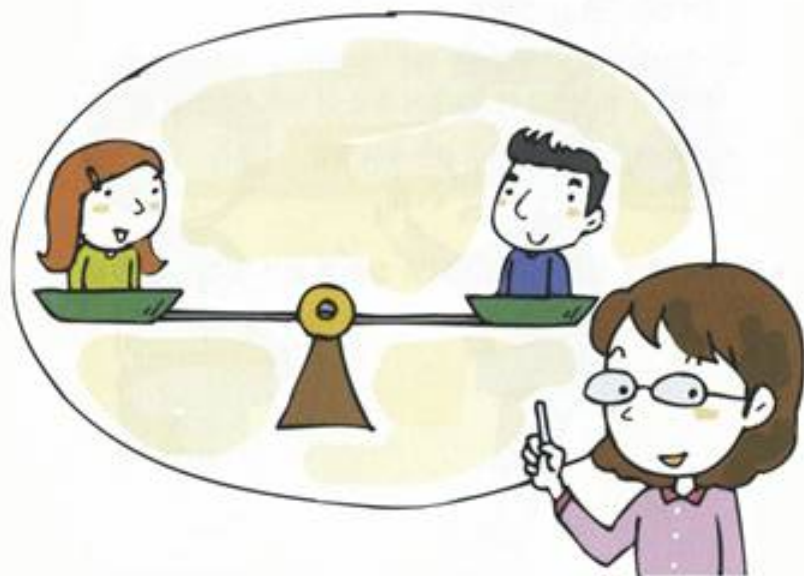
- "어디 갑히 여자가....."
-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전문직업 설명하면서 남성들의 직업인 것처럼 남성들만 언급함
- 강의시 습관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을 더 자주 부르고 남학생 위주로 강의진행함
- 여학생들이 질문·발표하면 자주 중단시키나,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이 할 때보다 더 주의깊게 듣고 더 자주 반응보임
- 강의실에서 마치 여학생이 없는 듯이 말함

- 모임에서 특정 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예:함께 블루스 출 것을 요구)

예방과 대처

성폭력 예방가이드

- 평소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자기감정과 느낌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아는 자기주장능력을 항상 시킵니다.
- 성적 언동에 관한 수용태도는 개인간, 남녀간,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며, 평소 언행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타인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친절함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라도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타인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듣고 인정합니다.
- 신체적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방적이면 폭력임을 명심합니다.
-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여기는 의식을 버립니다.
- 여성 비하적인 발언,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피합니다.
- 양성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성적 용어로서 기술하는 일은 가능한 피합니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자세

평소에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있는 태도를 갖는다.

자신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평가하고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방심하지 말자

나에게 언제든지 성폭력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늘 주변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심하지 않는 준비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직감을 믿자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앞으로의 사태에서 벗어날 준비,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나의 직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즉각적이고 순발력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을 이용하자

내가 위협에 처했을 때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 수단(예: 분노, 힘, 주위 물건, 호신술 등)이 되는지 생각해두어 위협에 맞서는 기술 연마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시끄럽게 떠들자

만일 내가 현재 성폭력 위험상황에 직면했다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면서 명확하게 사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릴 수 있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 이후의 증인들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며, 당신의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성폭력 가해자를 위협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목격시 즉각 상황에 끼어들어 돕자

성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동안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함께 말할 수 있고, 직접 개입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폭력적인 성폭력 상황이라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성폭력 상황을 알린 후 즉각적으로 경찰(112, 1366)에 신고합니다.



성폭력 대처가이드

개인적 대응

- 성폭력 상황을 피합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 가해자가 한 행동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한 행동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예: "당신이 한 행동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가해자에게 즉각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No라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 가해자의 즉각적인 행동중지 요구를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사죄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부딪치기 어려울 때에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당시 피해자의 불쾌했던 생각이나 느낌과 행동중지 및 책임요구 등을 편지(내용증명)로 보내십시오.



- 가해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특성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처리기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 숨기지 말고 주위에 믿음직한 관계기관이나 교내 성폭력상담실(2123-2118, helper@yonsei.ac.kr)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 성폭력 피해사실 및 자신의 느낌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또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관계기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54-0077)
- 한국성폭력상담소(02-529-4271)
- 남녀차별 신고센터(02-3477-4076)
-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415-0182)
- 여형사 기동대(02-738-8080)
- 경찰청 여성실(1366)
- 경찰·검찰에 고소, 고발



교내 성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 성폭력 사건이 교내 성폭력상담실로 신고(내방, 전화, e-mail이용), 서면접수되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를 거쳐 사건자체 조사후 자체 조치를 취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대학 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가해자는 대학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 학내 사건인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적·법률적 연계가 필요할 때에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54-0077)로 의뢰합니다





성폭력·성희롱·남녀차별 신고

- 성폭력상담실 방문, 전화, e-mail 신고
- 서면접수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집

- 위원회 자체조사
- 성폭력 상담실 의뢰조사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

- 사건 자체 조정
- 가해자에 대한 대학징계위원회로 징계 요구



사건처리종료

-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자체 조치
- 대학징계위원회의 징계·처벌



교내 성폭력상담실의 피해자 지원

-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하며,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피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 가치관과 입장을 생각합니다.
-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피해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합니다.
-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의료적·법률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응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된다.
- 제 3 조 【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 제 5 조 【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제 6 조 【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⑥ 상담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 제 7 조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8 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교수, 직원 및 학생위원 3인은 정기회의와 각각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직위원에 포함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



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재척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⑥, 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배상 책임

형법

<악취와 유인의 죄>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악취, 유인】 10년이하의 징역
-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악취, 유인, 매매 등】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영리등을 위한 상습적인 악취, 유인, 매매 등】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악취, 유인, 매매】 3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국외이송을 위한 상습적인 악취, 유인, 매매】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290조 【예비, 음모】 3년이하의 징역
-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악취, 유인】 5년이하의 징역
- 제292조 【악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이하의 징역
【제287조, 제291조의 수수 또는 은닉】 5년이하의 징역
- 제293조 【제292조의 상습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294조 【제287조, 제289조, 제291조, 제293조의 미수범】 감경 처벌
- 제295조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의 미수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9조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함.
 제300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 감경 처벌.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장애자에 대한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추행】 5년 이하의 징역.
 제303조 【업무상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호자의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7년 이하의 징역.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함.
 제306조 【고소】 제297조, 제300조, 제302조,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능함.



〈성폭력에 관한 죄〉

- 제241조 【간통】 2년 이하의 징역.
 제242조 【음행매개 간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3조 【음화반포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4조 【음화제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5조 【공연음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절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조 【특수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함.
 【장애인의 추행】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함.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함.

-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함.
- 제9조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장애인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10조 【특수강도, 장애인,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 강제추행 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1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호자의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조 【특수강도, 장애인,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 강제추행 등 살인·치사 미수】 미수범 감경
-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 이용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행인 : 연세대학교 총장 김우식
 발행처 :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성폭력상담실
 발행일 : 2002. 6.
 편집위원장 : 여학생처장 윤정숙
 편집위원 : 박미자, 김영희
 편집디자인·인쇄 : 수도문화사 (02)712-7644